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6년 1월 현재 서술형 279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7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웹페이지 <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Q

배우자의 폭언, 무시 등 정서적 학대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통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신고는 망설여지지만 우선 상담이라도 받고 싶은데요, 혹시 상담받은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질까 봐 걱정되는데, 비밀 보장이 확실히 되나요?

A

가정폭력 상담사실과 내용은 관련 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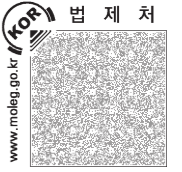
가정폭력 상담 및 관련기관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 ✔ 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항
- ✔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난처 관련 사항
- ✔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 사항
-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치료 관련 사항
- ✔ 그 밖에 가정폭력 관련 사항

가정폭력 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전화	홈페이지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https://www.women1366.kr/_main/main.html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http://www.safe182.go.kr
서울남성의전화	02-2652-0456	http://www.manhotline.or.kr
가족센터	1577-9337	http://www.familynet.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http://www.lawhome.or.kr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하여 상담을 받거나, 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참조).

상담내용의 비밀엄수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3호).

가정폭력 피해자

Q 가정폭력 고소 후 배우자의 지속적인 협박과 접근 시도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복당할까봐 걱정되는데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특히 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가해자와의 긴급한 격리가 절실한데,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가정폭력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피해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2항).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임시보호명령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격리조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1항).

임시보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2항).

임시보호명령은 필요한 경우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75조).



가정폭력 피해자

Q 가정폭력을 피해 자녀(만 18세 미만)와 함께 집을 나왔는데, 가해자가 등본을 떼어 주소를 알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아이를 전학시켜야 할 것 같고, 치료비·부양료 등의 손해배상을 민사소송 없이 받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A 네.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동반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면 주소지 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서 보호처분 선고 시, 법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부양에 필요한 금전 지급, 직접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배상 등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보호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종류	보호기간	비고
단기보호시설	6개월 이내 (최대 1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3개월의 범위에서 2차례 연장 가능
장기보호시설	2년 이내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
외국인보호시설	2년 이내	입소대상 : 외국인 피해자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입소대상 : 장애인인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 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피해사실 증거서류(입소 확인서, 상담사실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소지 외 취학 지원 및 비밀엄수 의무

가정폭력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참조).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여 아동의 주소지 외의 학교로의 입학·전학 등의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5항).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의 사실을 가정폭력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3항).





피해자 배상명령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8항 참조).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 임신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나 치료
- ✔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치료보호 비용 청구

피해자는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미 납부한 의료비 포함)을 가정폭력 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가정폭력 피해자

Q 가정폭력으로 다쳐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증이 계속되고 있지만 병원비가 걱정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일부 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의 실시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

Q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가 최근에 퇴소하였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이지만,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10% 수준인데,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A 보호시설 입소 이력이 있고,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고, 무주택 요건에도 부합하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제2호 우선공급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9) 및 제1호).

임대주택 규모	입주자격
50㎡ 미만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50㎡ 이상 6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60㎡ 초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사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위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여 퇴소한 사람은 제외)
-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피해자는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확인서 중 택1)를 발급 받은 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해당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424).



키워드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 상담, 가해자 제지, 피해자 분리, 여성폭력피해자, 임시조치, 격리,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 배상명령,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가정폭력 아동, 무료진료, 치료보호, 피해자 보호시설, 주민등록 열람제한, 국민임대주택